

# 한국체육대학교 명예교수 규정

제정 1997. 6. 13.(규칙 제216호)  
개정 2002. 7. 6.(규칙 제386호)  
2005. 8. 10.(규칙 제454호)  
2006. 7. 11.(규칙 제477호)  
2009. 2. 25.(규칙 제505호)  
2012. 3. 28.(규칙 제596호)  
2013. 2. 26.(규칙 제62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명예교수의 자격과 추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퇴직 당시 총장 또는 교수로 있던 자로서 재직기간 중 교육상,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여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통산 20년 이상 재직한 자
  2. 퇴직전 3년간의 전임교원업적평가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자
  3.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아니한 자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추천위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추천위원회)** ① 명예교수를 추대하기 위하여 명예교수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교학처장, 훈련처장과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

③ 추천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며, 재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명예교수로 추천된자의 인격과 덕망, 교육·학술상의 업적
2. 기타 명예교수 추대에 필요한 사항

**제4조(추대절차)** ① 명예교수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학과장 또는 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2. 교육 및 학술상의 업적조서
3. 본교발전에 기여한 공적조서
4.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

② 총장은 추천위원회에서 가결된 자를 본교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교수로 추대한다.

③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자는 재 추천할 수 없다.

**제5조(명예교수의 대우)** ①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며, 도서관 등 학교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연구실은 제외한다.

② 명예교수에게는 강의와 연구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강의는 퇴임직전 3년간 교수한 교과목 중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강좌(전문실기는 3시간이내)를 위촉할 수 있고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명예교수에 대하여는 그 전공분야에 관하여 연구활동 등에 참여하게 하거나 특별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명예교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자격상실)** 명예교수가 학교의 명예 또는 명예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을 때에는 총장은 본교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7조(임기)** 명예교수의 임기는 임용 일로 부터 종신으로 한다.

부 칙 (1997. 6. 13. 규칙 제21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9. 1. 규칙 제344호)

이 규정은 2001.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7. 6. 규칙 제386호)

이 규정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 10. 규칙 제45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 11. 규칙 제477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1항 1호 내지 2호는 200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2. 25. 규칙 제505호)

이 규정은 2009.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28. 규칙 제59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26. 규칙 제62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